

돼지고기 식용설육이란 ?

요즘 양돈업계에서는 91년도 부터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예시된 “돼지고기 식용설육”이 도대체 무엇이나에 대한 얘기가 많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낱 선 단어이고, 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자 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돼지고기가 수입개방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설육의 정의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혹자는 식용설육을 짜투리고기

라고도 하고 또는 돼지의 허를 칭 한다고도 하며, 내장·머리 등을 일컫는다고도 말한다.

그러면 돼지고기 식용설육의 정 의는 무엇일까?

농림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돼지고기 식용설육이란 도체를 제외한 부위, 즉 머리·발·꼬리· 내장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말하 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산물 의 일부를 뜻한다.

돼지고기 식용설육은 신성냉장

과 냉동 등 2가지 품목이 있는데, HS분류방식에서 돼지고기 식용설 육(신성냉장)은 HS 0206-30.00. 00, 돼지고기 식용설육(냉동)은 HS 0206-49.00.00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에 금년부터 91년까지 수 입이 개방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큰 돼지 간장(냉동)은 품목번호 HS 0206-41.00.00이고, 소시지는 HS 0206-49.00.00이다.

GATT 규정 18조 B 항이란 ?

GATT 규정 18조B항(BOP조항) 에 따르면 회원국중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개도국은 경제개발에 따르는 외환확보의 어려움을 감안, 일 정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국 제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되어있 다.

그러나 이 경우도 2년마다 그 타 당성 여부를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협의받도록 돼 있으며, 협의 결과 18조B항이 규정한 특혜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되면 수입제한 허용조치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BOP졸업이란 바로 이러한 수입 제한조치 인정의 졸업을 뜻한다.

어떤 나라가 BOP를 졸업하고도 수입제한 조치를 계속하면 이해 상대국은 이를 제소, GATT 패널회의에서 다루게 되고 BOP를 졸업한 이상 패널회의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96개 GATT회원국중 선진 국들도 쌀 등 20~30개 주요 농산 물은 실질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국

들도 이의를 제기안하는 양해가 이뤄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GATT 18조B항에 품목이 5백47개로 방대하다는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BOP회의 결과 한국의 졸업이 확정되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미·캐나다·EC 등 각 국의 개방압력은 더 강화돼 추가개 방은 불가피하게 가속화 될 전망이다. **葉影**